

한국체육대학교동창회회칙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명칭) 본 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동창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모교의 발전과 나아가 한국체육 및 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 제 4 조(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 5 조(정회원) 정회원은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 제 6 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한국체육대학교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인준한다.
- 제 7 조(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한다.
1. 회비납부
 2. 의결사항 준수
- 제 8 조(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발언권 및 의결권

제 3 장 임 원

- 제 9 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수석 부회장 1인)
 3. 이사 15인 이내
 4. 감사 2인
 5. 운영위원(각기 동창회장, 각부 동창회장)
 6. 상기 항(1-5항)의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10조(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는 상임이사와 일반이사로 구분하여 회장이 임명한다(단, 전임회장들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3. 운영위원은 각기 동창회장, 각부 동창회장으로 선임되어 위촉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4.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임기)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위촉에 의한다.

제12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3. 이사는 본 회의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가. 상임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무이사 : 본 회의 일반적인 사무를 관장한다.
 - (2) 재무이사 : 본 회의 재정사항을 담당한다.
 - (3) 기획이사 : 본 회의 제반사업의 계획을 담당한다.
 - (4) 학술이사 : 본 회의 학술업무를 담당한다.
 - (5) 섭외이사 : 본 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유지 및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4. 운영위원은 본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 사회의 의결사항을 수행하고 건의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명예회장 및 고문은 총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할 수 있고 회장의 요청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3조(구분)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4조(집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2월 사이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위임할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6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7조(공고) 총회를 개최코져 할 시는 개최 15일전에 총회 소집을 알린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8조(구성 및 구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9조(집회)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직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에서 부의할 사항
5. 재정에 관한 사항
6. 임원 결원시 보궐선출
7. 기타 선거관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22조(수입) 본 회의 제정은 입회비, 정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는 졸업시 납입하고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정기회비는 연간 1회로 하고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지출방법) 본 회의 회비지출은 목적에 부합되고 본 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출한다.

제24조(회계) 본 회의 회계기간은 1년(정기총회 기준)으로 하고 회계처리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 7 장 지 부

제25조(설치요건) 지부설치는 10인 이상의 정회원의 연명으로 신청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

장이 이를 인준한다.

제26조(규정) 지부는 본 회 회칙을 준수하고 지부회칙은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사업계획 및 그 결과를 본 회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제 8 장 보 칙

제27조(사무국) 본 회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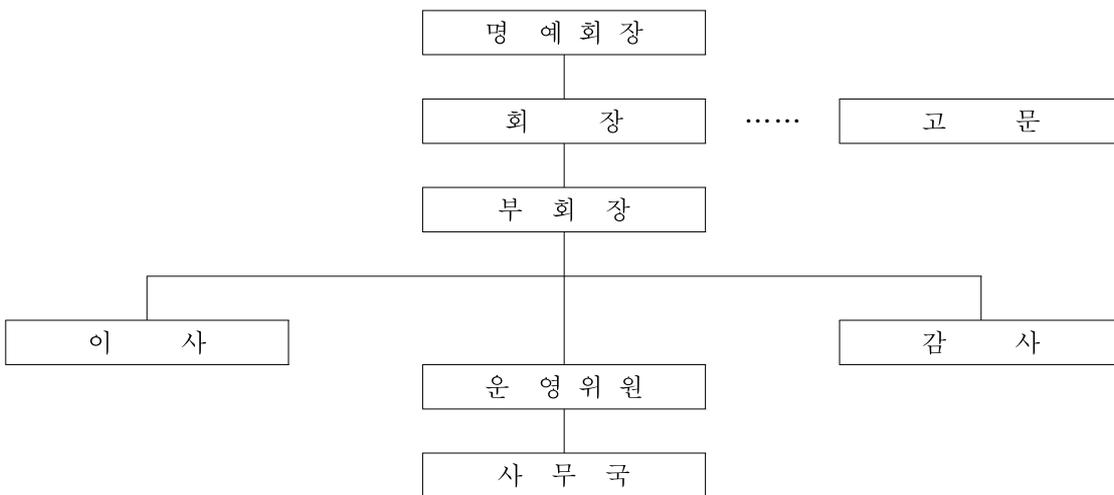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둔다. 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1인과 기별간사 1명을 둔다. 사무차장 및 간사는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 및 이사의 명을 받아 위임된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운영위원회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9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회원 50인 이상의 동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안되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상벌) 본 회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기구표)



제32조(세칙 및 관리)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하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